의안 번호	41

2022. 9.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 원 시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41

제출년월일 : 2022. 9. 7.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사유

❍ 마산합포구 문화동의 통술거리 및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위해 수립한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개요

❍ 사업목적

- 마산합포구 문화동 일원의 통술거리 상업지역과 인근 주거 지역에 대하여 각종 사업으로 지역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일원
- 면 적 : 490,000㎡
- 사업유형 : 특화재생
- 사업기간 : 2023.01 ~ 2026.12(4년간)
- 총사업비 : 194.1억

[국비 105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49억원, 자체지방비 17.9, 민간 1.2]

❍ 사업계획(안) 구상도



문화브랜딩공간	상권활력공간	창업혁신공간
A. 문화에세이	**C. 앵화양조장 조성**	**E. 문화동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① (지자체)문화브랜딩 ② (지자체)문화에세이 투어	① 앵화양조장 ② 통통주차장 ③ (지자체)앵화양조장 프로그램	① 문화동 로컬콘텐츠 타운 ② (지자체)문화동 로컬콘텐츠 타운 프로그램 ③ (지자체)성과관리 프로그램
B. 안심마을 조성	**D. 통통가로 조성**	
① 집수리사업 ② 셉테드 특화사업 ③ (지자체)집수리사업 전수조사	① 중심가로 ② 통통가로 ③ MZ청춘가로	

❍ 사업계획(안)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총사업비 (백만원)
문화 브랜딩 공간	문화 에세이	SW	(지자체) 문화브랜딩	- 문화지구의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개발	20
		SW	(지자체) 문화에세이 투어	- 문화지구 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투어코스 구축	100
		소계			120
	안심 마을 조성	HW	집수리사업	- 노후주택을 대상으로한 집수리 사업 진행	1,250
		HW	셉테드 특화사업	- 대상지내 위험구역을 검토하여 셉테드사업 진행	641
		SW	(지자체)집수리 사업 전수조사	- 집수리 사업을 위한 노후주택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실시	50
		소계			1,941
	계				**2,061**
상권 활력 공간	앵화 양조장 조성	HW	앵화양조장	- 문화지구의 지역 특색을 살린 앵화탕과 주류를 테마로 통통가로 활력거점 조성	3,929
		HW	통통주차장	- 쇠퇴하는 통술거리에 방문객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장 조성	1,487
		SW	(지자체)앵화 양조장 프로그램	- 앵화양조장에서 할 수 있는 주조관련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80
		소계			5,496
	통통 가로 조성	HW	중심가로	- 마산의 역사문화 중심지를 연결하는 3.15대로에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가로 조성	1,756
		HW	통통가로	- 노후하고 특색없는 중심가로에 역사문화를 테마로 한 지역특화가로경관 조성	2,129
		HW	MZ청춘가로	- 통학로, 원룸거리, 창원천 달빛길을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가로시설 조성	2,938
		소계			6,823
	계				**12,319**
창업 혁신 공간	문화동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HW	문화동 로컬콘텐츠 타운	- 경남대와 연계한 창업 거점시설 및 주민 프로그램실 조성	3,305
		SW	(지자체)문화동 로컬콘텐츠 타운 프로그램	- 문화동 로컬콘텐츠 타운 내 경남대 링크사업단과 연계한 일자리&창업 프로그램 및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80
		SW	(지자체)성과관리 프로그램	- 도시재생사업의 연차별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추진	80
		소계			3,465
	계				**3,465**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185**
마중물 사업 계					**18,030**
지자체	해양 벚꽃길 인프라 구축 사업				**80**
	자원봉사센터 신축(문화콘텐츠 타운)				**1,300**
지자체 사업 계					**1,380**
총 사업비 19,410백만원 (국비 10,500백만원, 도비 2,100, 시비 4,900, 지차지방비 1,790백만원, 민간 120백만원)					**19,410**

❍ 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위치도



3.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추진경위>

❍ 도시재생 예비학교 운영(기본과정) : ′20. 5 ~ 1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 12. 22.

❍ 주민협의체 모집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1. 1. 25.

❍ 경남대학교와 도시재생 업무협약 체결 : ′21. 3. 17.

❍ 2021년 상반기 도시재생 대학 운영 : ′21. 2. ~ 6.

❍ 2021년 하반기 도시재생 대학 운영 : ′21. 7. ~ 10.

❍ 상인간담회 실시 : ′21. 8. 5.

❍ 주민공청회 실시(비대면-유튜브) : ′21. 9.

❍ 창원시-(주)무학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1. 9. 7.

❍ 2022년 도시재생대학(주류아카데미) 운영 : ′21. 2. ~ 6.

<향후계획>

- ’22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 ’22. 9.
-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22. 10.
-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심의 및 고시 : ’22. 12.
- 도시재생사업 시행 : ’23. 1.
- 도시재생사업 완료 : ’26. 12.

▣ 법적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별첨]

관 련 법 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